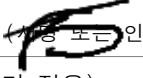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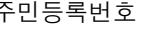


[V]변경 ·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아래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주민등록표 처리 (인)	관련업무 담당경유 (인)	관계기관 통보 (인)				
신고인	성명 김뽀빠	주민등록번호 930815-1111111						
	세대주와의 관계 모	전화번호 02-111-1111	휴대전화번호 010-1111-1111					
	주소 서울 종량구 공릉로2가길 6 (목동)							
신고내용 ○ㄹ○ㄴㄹ								
신고사항 대상자 인적사항	세대주 확인	전(前)세대주 성명 이뽀빠	(서명  인)	세대주 성명 이뽀빠	( 서명  인)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내용(정정의 경우에만 적음)				
				정정 전	정정 후			
				부	김뽀빠	930815-1111111	○ㄴㄹ	ㄴㅇㄹ

「주민등록법」 제13조 및 제20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V]변경 ·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를 합니다.

2026년 2월 2일

신고인

김뽀빠

( 서명  인)

읍 · 면 · 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V]변경 ·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2월 2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김뽀빠

( 서명  인)

첨부서류	영주귀국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변경 · 정정 신청 시에만 해당)
------	--

유의사항

1. "신고인"란에 신고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 확인"란에 세대주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신고내용"란에는 변경·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할 사항[예: 등록 상태의 변경(재외국민→거주자), 세대주의 변경, 동일 거주지 내 세대 분가, 지번 정정,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을 적어야 하며, 등록 상태의 변경은 재외국민 등록된 사람이 거주자로 바뀌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민출국 말소자 또는 현지이주 말소자가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지번 정정 등 주소 정정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정정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등록사항 정정의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르거나 등록기준지 조회로 처리하고, 거주불명 등록자의 사실조회로 처리합니다.
3. "전세대주 성명"란은 세대주 변경, 말소, 거주불명 등록 또는 동일 거주지 내 세대 합가·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세대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경우에는 전세대주 성명만 기재). 다만, 전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거짓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재외국민이 영주귀국하여 거주자로 변경·정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주민등록신고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을 통하여 사후 확인되며,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